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 도 자 료**	힘내라 대구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2020년 3월 9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3. 8.(일)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0. 3. 8.(일)	담당부서	에너지안전과
담당과장	이희원 과장 (044-203-5270)	담 당 자	최재영 사무관 (044-203-5272) 임은성 사무관 (044-203-5179)

국민안전 강화 및 안전관리시스템 확충을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3.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마련을 통해 **공포 1년 이후 시행된다고 하였다.**

○ 1998년 부산 냉동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이 논의된 이후, 약 20년만에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이 **여·야 이견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 김정훈의원('16.11), 김성환의원('19.1)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을 토대로 마련된 산자중기위 위원장 대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 전기설비의 복잡화·대용량화, 안전기술 발전 등 여건변화가 반영되고, **전기사업과 안전관리 분야 유관기관*들에 대한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동법이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대한전기협회 등

□ 전기사업법에서 안전규정을 분리하여 별도의 「전기안전관리법」을 제정함으로써, 전기화재와 감전사고 예방 등 **국민 안전 강화**와 함께 **사업과 안전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 원자력안전법(원전), 고압가스안전관리법(가스), 송유관안전관리법(송유관), 승강기안전관리법(승강기) 등

○ 우선,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노후 공동주택의 개별세대에 대한 점검 제도가 신설되어** 정기적인 안전검사 수행과 시설 개보수 등을 통해 전기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되었으며,

- 이와 함께, 야간·정전 등 비상상황에서 전기재해 방지와 안전한 전기사용이 가능하도록 **응급조치 지원을 확대 시행**할 수 있어 **보편적 안전서비스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안전업무를 수행중인 위탁업체의 등록요건 신설, 안전관리자의 시설 개선조치 권고, 불이익 처우금지 규정 신설 및 안전대행업무 대가의 산정기준 고시 등을 통해 **안전업무 종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게 되고, **업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 특히, 긴급점검을 통해 위험성이 있는 전기설비에 대해 **철거·이전 등 긴급명령 제도를 신설**하여 국민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예방적 안전조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 산업부는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을 계기로 제천·밀양 화재와 같은 전기화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진화된 안전시스템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 전기안전관리법 국회통과에 따라 전문가 및 업계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하위법령(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차질없이 제정**하고,

○ 안전제도 정비에 따라 국민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후 공동주택 개별세대 점검 시범사업 추진 등 전기안전관리법 시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할 예정이다.

[참고] 전기안전관리법 조문체계. 끝.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최재영 사무관(☎ 044-203-527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전기안전관리법」 조문 체계**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3조(국가의 책무)
제2조(정의)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제7조(전기안전관리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등)
제6조(전기안전자문기구의 설치)	-
제3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제8조(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제15조(특별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제9조(사용전검사)	제16조(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제10조(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제17조(안전등급 지정 등)
제11조(정기검사)	제18조(검사·점검의 방법·절차 등)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제19조(전기설비의 유지)
제13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제20조(적합명령)
제14조(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	제21조(정보의 공개)
제4장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26조(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등의 등록)
제2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등)	제27조(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제24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	제28조(청문)
제25조(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	제29조(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등)
제5장 한국전기안전공사	
제30조(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설립)	제3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1조(안전공사의 운영 등)	제35조(감독)
제32조(임원)	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3조(사업)	제37조(비밀누설 금지 등)
제6장 보칙	
제38조(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42조(수수료 등)
제39조(보고)	제43조(권한의 위임·위탁)
제40조(중대한 사고의 통보·조사)	제44조(관리·감독)
제41조(전기재해통계의 작성)	제4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제46조 내지 제50조(벌칙), 제51조(양벌규정), 제52조(과태료)	
부칙	
제1조(시행일)	제5조(시공관리책임자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3조(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